

2021학년도 3월 신입학  
재외국민(새터민) 모집안내

수시모집  
정시모집 「가」, 「다」 군



**성결대학교**  
SUNGKYUL UNIVERSITY

## 모집학부(과) 및 인원

구 분	대 학	학부(과)	입학정원 (명)	모집인원	
				재외국민 (2%이내)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주간	신학대학	신학과	50	24 (미지정)	모집인원 제한없음
		기독교교육상담학과	40		
		문화선교학과	30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35		
		영어영문학과	40		
		중어중문학과	40		
	사회과학 대학	국제개발협력학과	40		
		사회복지학과	60		
		행정학과	40		
	글로벌경영 기술대학	관광개발학과	40		
		경영학과	40		
		동아시아물류학부 (유통물류 / 국제물류전공)	75		
		산업경영공학과	60		
	IT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70		
		정보통신공학과	70		
		미디어소프트웨어학과	70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35		
	예술대학	음악학부 (성악/피아노 전공)	38		
		연극영화학부 (연기예술/영화영상 전공)	45		
		뷰티디자인학과	40		
공연음악예술학부 (현대실용음악/현대교회음악 전공)		30			
야간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40		
	사회과학 대학	사회복지학과	40		
		행정학과	40		
	글로벌경영 기술대학	경영학과	40		

※ 입학정원의 2%, 학부(과) 모집단위별로 10%의 인원을 모집합니다.

※ 수시에서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미달 인원만큼 정시모집에서 선발합니다.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은 입학정원 제한이 없습니다.

##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0. 7. 20.(월) - 7. 24.(금) 18:00	입학홍보과 (인터넷접수)	입학지원서는 성결대학교 홈페이지 입시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추가)서류접수	2020. 7. 20.(월) - 7. 27.(월) 16:00	입학홍보과 (방문 또는 우편)	
	합격자발표	2020. 11. 17.(화) 전후	본교 홈페이지	
	수시에치금 등록	2020. 12. 28.(월) ~ 12. 30.(수) 16:00	기업은행 전국지점	
	잔여 등록금 납부	2021. 2. 8.(월) ~ 2. 10.(수) 16:00		
정시모집	원서접수	2021. 1. 7.(목) - 1. 11.(월) 18:00	입학홍보과 (방문접수)	입학지원서는 성결대학교 홈페이지 입시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추가)서류접수	2021. 1. 7.(목) - 1. 15.(금) 16:00	입학관리과 (방문 또는 우편)	
	합격자발표	2021. 2. 4.(목)	본교 홈페이지	
	등록	2021. 2. 8.(월) ~ 2. 10.(수) 16:00	기업은행 전국지점	

※ 입시원서 및 제반 서류는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차질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 자격 안내

### 1. 지원 대상

: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21년 2월(일본 소재 고교 : 3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자격 구분별 세부 지원 자격

#### 가. 영주교포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1,095일) 이상 영주하고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고 있는 교포의 자녀로서 해외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나. 해외근무자의 자녀

##### ■ 공통 지원 자격

구 분	세부 내용
해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	부모 1인 이상의 해외근무자 자녀로서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자격 구분별 지원 요건

자격 구분	지원 요건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자녀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자녀
해외근무 상사주재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녀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사(또는 해외사무소) 임직원의 자녀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 임직원의 자녀 <b>※ 설치인증, 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b>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 임직원의 자녀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의 자녀 - 내국법인이 해당법인의 해외지사(사무소)에 파견한 임직원의 자녀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상호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근무자의 자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근무자의 자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외국에서 3년(1,095일) 이상 근무 및 거주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경우에 한함)로서 해외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라. 기타 재외국민 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서 해외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자격 구분별 지원 요건

자격 구분	지원 요건
자영업자의 자녀	해당국 정부로부터 영업허가 승인을 받고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영업자의 자녀
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해외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자의 자녀
선교사의 자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독립교회협의회, 한국교회연합에서 인정하는 종교 단체에서 해외에 파견한 선교사의 자녀
해외 파견 교직원의 자녀	

라.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마.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

### 3. 해외 재학, 근무, 거주, 체류 기간 기준

#### 가. 해외 재학, 근무, 거주 기간

구분	세부 지원자격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근무	거주(영주)	거주(영주)
연속/비연속	영주권자(교포)	3년	3년	3년	3년	3년
	해외근무자 유치과학자· 교수요원	3년	3년	3년	3년	3년
	기타 재외국민	3년	3년	3년	3년	3년

- ※ 재학기간: 부모의 근무기간 내에 해외에 재학한 기간(방학 및 휴일에 국내에서 임시로 체류한 기간은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 근무기간: 해외 근무자의 근무기간으로 경력증명서에 기록된 기간(해외 근무 상사주재원의 경우 파견 기간이 지난 근무기간은 외국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의 출국일부터 입국일 사이의 기간
- ※ 영주기간: 해당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최초 발급받은 날로부터 본교 자격인정 기준시점(학기 개시 전일)까지 해당국에 영주한 기간

#### 나. 해외체류일수 조건

구분	세부 지원자격
학생	각각의 1개년(약 365일) 기간마다 3/4이상을 근무(거주)지 국가에서 체류해야함
부모	각각의 1개년(약 365일) 기간마다 2/3이상을 근무(거주)지 국가에서 체류해야함

- ※ 체류기간: 해당국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 1개년: 학생이 학기 개시일 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기간

### 4. 외국학교 인정 기준

- 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소정의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과정만 인정함
  -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유치원 과정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국내·외 비인가학교(대한민국 교육부 비인가 대안학교 포함),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및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 ※ 정규과정과 어학과정을 동시에 이수한 경우 : 정규과정 성적이 있는 학기는 인정함.

- 나. 부모가 근무(거주)한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학교에서의 학력만을 인정함.
  - ※ 근무국가의 지역상황, 전쟁 등의 사유로 부모의 근무(거주)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학하였을 경우에는 본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3국 수학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 5. 외국학교 재학기간 및 교육과정 인정기준

#### 가. 외국학교 재학기간 인정 기준

- (1) 해당 학기에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2) 국내·외 초·중·고 교육과정 총 재학기간 12년(24학기) 이수를 충족해야 함.
  - ※ 단,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총 재학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 ※ 외국학교 교육과정에 재학한 후에 국내 고등학교 과정으로 신입학하여 국내 고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학교 고교과정은 지원 자격을 취득을 위한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3)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교육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4)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만 대체할 수 있음
- (5)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함.

## 나. 외국학교 교육과정 인정 기준

(1) 외국학교 학년배정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되 우리나라 학제 (12학년제, 1개 학년=2학기제)에 맞추어 계산을 함.

교육과정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1~6학년 과정	2학년~7학년 과정
중학교	7~9학년 과정	8학년~10학년 과정
고등학교	10~12학년 과정	11학년~13학년 과정

※ 11학년제 이하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12학년 대비 부족한 기간만큼 당해국 대학 등에서 이수한 경우에 한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인정함.

(2)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자의 교육과정 인정 기준

이수 국가 수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인정 기준		
1개 국가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2개 이상의 국가	학년제	인정여부 및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u>부족한 학교 교육 과정*</u> 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13학년이상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전형 방법

- 서류평가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 지원자의 학력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습니다.

## 지원 절차 및 전형방법

### 1. 지원절차

인터넷 접수 → 증빙서류 제출 → 자격요건 및 서류심사(본 대학교) → 합격자 발표 → 등록

※ 정시모집은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2. 전형과정

- 본 대학은 지원자의 지원 서류로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자에게 통보함.
-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까지 본 대학교에 접수하여야 함.
- 본 대학의 지원자는 서류심사에 대한 합격통보를 받은 후, 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함.

# 제출서류

## 1. 제출서류 목록

No.	제출서류	영주교포 자녀	해외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 수료자	기타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비고
			해외 근무원 자녀	해외 근무상사 직원 자녀	외국 정부 /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해외 현지 회사 근무자 자녀	해외 현지 자영업자 자녀	해외 선교사 자녀	재외 국민	결혼 이주민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	●	●	●	●	●	●	●	●	●	인터넷접수 : 접수 후 출력 방문접수 : 입학홈페이지 다운 후 작성
2	자기소개서(본교소정양식)	●	●	●	●	●	●	●	●	●	●	●	인터넷접수 : 접수 후 출력 방문접수 : 입학홈페이지 다운 후 작성
3	학력조회 동의서	●	●	●	●	●	●	●	●	●	●	●	인터넷접수 : 접수 후 출력 방문접수 : 입학홈페이지 다운 후 작성
4	재학기간 및 체류기간 심사표	●	●	●	●	●	●	●	●	●	●	●	인터넷접수 : 접수 후 출력 방문접수 : 입학홈페이지 다운 후 작성
5	외국학교 이수 현황표	●	●	●	●	●	●	●	●	●	●	●	인터넷접수 : 접수 후 출력 방문접수 : 입학홈페이지 다운 후 작성
6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	●	●	●	●	●	●	●	●	●	검정고시 학력은 인정되지 않음 국내고등학교 : 학생부 대체 가능
7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	●	●	
8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	●	●	●	●	●	●	●	●	●	●	부모 이혼 시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학생 본인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9	주민등록말소등본	●											
10	영주권 사본(부모, 학생)	●											영주권 취득일 명기
11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만)	● (학생만)		
1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거주사실증명서)	● (부모,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학생만)			
13	여권 사본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만)	● (학생만)		
14	보호자 재직증명서	●	●	●	●	●	●						외국 근무 경력기간 명기
15	해외지사설치인증서 (해외직접투자증명서)			●									국내 은행권 발급
16	외국정부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사실증명서							●					
17	현지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현지 법인 법인세 납부 이력					●	●						
18	선교단체 등록증 사본 파송선교사 확인서								●				파송기간 명기
19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		
20	혼인관계증명서										●		
21	사진 2매	●	●	●	●	●	●	●	●	●	●	●	방문 접수 시에 한해 제출
2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교소정양식)	●	●	●	●	●	●	●	●	●	●	●	입학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작성
2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학력인정증명서, 검정고시증명서, 국내고교졸업(예정)증명서 중 택1											○ ○ ○

## 2. 일반 준수사항

- 가. 제출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급기관(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본교의 원본 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나. 한국어로 발급되지 아니한(외국에서 발행된)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거나 학교 소재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함. (단, 우리 나라 교육부에서 재외교육기관으로 인정한 학교가 발급한 서류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다.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 라. 부모의 이혼, 사망, 동거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해야 함.
- 마. 고교졸업예정자인 경우 합격 후 졸업증명서를 2021년 2월 26일(금)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바.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사. 모든 지원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본교 양식)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

## 유의 사항

1.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지원 횟수를 6회로 제한합니다.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를 초과한 접수는 취소 요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2. 이중국적 보유자는 내국인으로 보아 특례입학을 불허합니다.
3.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와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국내 연락처와 국내 주소지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기재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성결대학교 입학홍보과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연락처를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합니다.
5. 자기소개서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6. 본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특례입학 업무처리 편람과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입학 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8.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 가. 2021학년도 3월 신입학 수시 재외국민 전형에 **최종 합격한 자**는 아래의 전형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할 경우 모든 합격이 취소됩니다.
    - (1) 2021학년도 정시모집, 추가모집 및 2021학년도 9월 입학 수시모집(재외국민 전형 포함)
    - (2) 수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포함)에서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은 반드시 한 대학교에만 등록(예치금 납부)하여야 하며, 이중 등록 시에는 등록된 모든 대학교의 합격이 취소됩니다.
9. 서류의 위조나 변조, 구비서류 미비 등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이러한 사실이 추후에 발견될 경우 입학이 허가된 후라도 합격 취소 또는 입학 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전형료

1. 입시 전형료 : 100,000원
2. 전형료 환불규정
  - 가. 지원자격 미달자, 단순 번심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한해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 (1) 응시생의 착오로 인한 입학전형료 과납의 경우 : 과납한 금액 전액
    -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입학전형료 전액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입학전형료 전액
    - (4) 질병(사고)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입학전형료 전액  
-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본교가 인정한 자에 한함.
    - (5) 입학 전형 종료 후 입학전형 관련 손실·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학교방문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학전형 응시생에게 반환합니다 (단, 입학전형료 반환금액이 금융기관 전산망 사용료 미만일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 등록금 납부 안내

1. 수시모집 합격생은 수시 예치금 등록기간(2020. 12. 28.(월) - 12. 30.(수))에 등록확인예치금(300,000원)을 우선 납부하고, 등록금 확정 후 차액은 신입생 등록기간 (2021. 2. 8.(월) - 2. 10.(수))에 등록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2. 정시모집 합격생은 신입생 등록기간(2021. 2. 8.(월) - 2. 10.(수))에 등록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 입학 안내

- 담당부서: 성결대학교 입학홍보과
- 연락처: 031-467-8288, 8965
- 주 소: (140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